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7월 24일 평창군수 제출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238회 평창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8월 7일) 상정
-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년 8월 13일)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기획감사실장 유동근)

### 가. 제안이유

- 연도 중 보조내시 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5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비,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등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8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53,957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4,485백만원이 증액된 404,177백만원, 특별회계는 9,472백만원이 증액된 44,605백만원 임.

####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일반회계가 세외수입 544백만원, 지방교부세 38,985백만원, 국·도비보조금 3,481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74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48백만원, 국·도비보조금 89백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135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정책사업비 307,278백만원, 재무활동 42,490백만원, 행정운영경비 54,409백만원, 특별회계는 정책사업비 39,425백만원, 재무활동 3,596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584백만원 임.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최순철)

#### 【 검토결과 】

##### ①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8,781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5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04,177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485백만원(12.37%)

○ 특별회계는 44,60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72백만원(26.96%)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음.

##### ②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4,485백만원이  
증액된 404,177백만원임.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44백만원이 증액된 12,905백만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동강따라 천리길 조성사업 120백만원,  
지역전략식품 산업육성사업 25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그 외수입 170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8,985백만원이 증액된 232,071백만원으로  
보통교부세 36,932백만원, 부동산교부세 2,05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3,481백만원이 증액된 96,392백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72백만원, 시·도비보조금 2,109백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474백만원이 증액된 26,337백만원으로, 전년도이월금 1,484백만원을 증액하고 전입금을 10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음.

### ③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4,485백만원이 증액된 404,177백만원 임.
- 정책사업은 기정액 대비 32,048백만원이 증액된 307,278백만원
- 재무활동은 11,073백만원이 증액된 42,490백만원
- 행정운영경비는 1,364백만원이 증액된 54,40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기능별 세출예산은  
농림해양수산 68,655백만원(16.99%)  
사회복지 62,032백만원(15.35%)  
기타 54,429백만원(13.47%)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 조직별 세출예산은
  - 자치행정과 58,332백만원(14.43%)
  - 주민생활지원과 55,111백만원(13.64%)
  - 안전건설과 54,410백만원(13.46%) 순으로 배분되었음.

○ 성질별 세출예산은

자본지출 169,051백만원(41.83%)

경상이전비 109,328백만원(27.05%)

인건비 48,826백만원(12.08%) 등의 순으로 배분되었으며

지방채 조기상환 계획에 따라 **보전재원**이 73.95%인 9,000백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올림픽이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반환금으로 인한 예비비및기타의 증가가 81.22%로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4]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018년도 제2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4,605백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47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467백만원**이 증액된 **23,38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역의 배수관로 확장공사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편성에 따라 증액된 것임.

○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42백만원** 증액된 **396백만원**이 편성되었고

○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는 1,887백만원 증액된 2,817백만원으로, 균유지 집단화 사업으로 2,000백만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113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2백만원**이 증액된 **16,858백만원**이며,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비 편성에 따른 것임.

#### 5] 계속비사업

□ 계속비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는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5년 이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

- 현재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15건, 특별회계 6건으로 총 21건이며  
금회 추경에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 평창송어종합체험장 건립 60백만원
  - 평창보건의료원 이전 신축 1,300백만원,
  - 방림(계촌)농어촌생활용수개발 2,000백만원 등 3건의 사업에 대해  
3,36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⑥ 종합검토의견

### □ 세입예산안을 보면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총 540억원 규모로  
주요 재원은 지방교부세 390억원, 보조금 36억원,  
기정예산 편성이후 증가분 등의 확정금액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잉여금 85억원은 결산에 따라 편성하였음.

### □ 세출예산안을 보면

-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총 540억원 규모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변경 보조사업 변경과 범정의무경비부담,  
국비 집행잔액 반납, 불가피한 주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해 편성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방교부세 증가로 인해 신규사업이 다수 편성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90억원이 편성 상환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한 모습도 나타남.
- 금회 편성된 3억이상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예산은 예산이 이월 또는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주요사업 현황(3억원 이상 증액)>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사업명	예산액			비고
		예산액	가정액	증감액	
합 계	40개사업	43,039	16,830	26,209	
올림픽기념사업단 (2)	올림픽 개최지역 서비스업종 시설개선사업	350	0	350	도비보조
	평창평화포럼 개최	1,000	0	1,000	자체사업
문화관광과 (3)	평창 숲속 뮤직&힐링 사업지원	800	0	800	도비보조
	월정사전시관 주변 전선지중화 정비사업	340	0	340	자체사업
	월정사 북대 미륵암 복원사업	1,700	1,000	700	도비보조
자치행정과 (3)	주민공지사향 안내시스템 통합발령 시스템 구축	300	0	300	도비보조
	커뮤니티센터 및 공연장 조성	500	0	500	국고보조
	커뮤니티센터 매입	400	0	400	국고보조
재무과(1)	군유지 집단화 사업	2,790	790	2,000	자체사업
경제체육과(1)	마중물 일자리사업 인건비	1,000	400	600	자체사업
환경위생과 (2)	노동리 하수관로 정비공사	300	0	300	자체사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	500	0	500	자체사업
산림과(1)	산양삼클러스터 생산단지 조성	600	0	600	자체사업
안전건설과 (13)	간평교(D급)재가설공사	3,000	1,800	1,200	자체사업
	군도1호선(상리~종부)도로 확포장	500	200	300	자체사업
	군도 아스콘 덧씌우기	900	0	900	자체사업
	농어촌도로 용평202호(등매교) 도로확포장	400	0	400	자체사업
	농어촌도로(미탄201호) 확포장사업	400	0	400	자체사업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700	300	400	자체사업
	소교량 가설	1,000	500	500	자체사업

소관부서	사 업 명	예 산 액			비고
		예산액	가정액	증감액	
안전건설과	하천,소하천 정비사업	1,750	1,250	500	자체사업
	하천 우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800	300	500	자체사업
	도·배수로 정비사업(8개읍면)	3,300	3,000	300	자체사업
	방림4리(중앙) 도배수로 정비	500	0	500	자체사업
	농업기반시설 수해복구	949	0	949	도비보조
	농산물반출 도로정비 사업 (8개읍면)	3,500	3,000	500	자체사업
도시주택과 (4)	시가지 주차장 조성공사	1,775	1,100	675	자체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800	300	500	자체사업
	황계6리 침수지역 정비사업	2,395	0	2,395	자체사업
	벽지 및 비수익노선 버스운송 손실액지원	1,062	700	362	도비보조
시설관리과(1)	체육시설 설치 및 정비	2,190	1,790	400	자체사업
보건사업과 (3)	보건의료원 주차장 조성비	800	0	800	자체사업
	보건의료원 청사이전 집기류 구입	300	0	300	자체사업
	보건지소 진료사업 운영	800	400	400	자체사업
상하수도사업소 (6)	진부면 송정1리(약수동)배수관로 확장공사	750	0	750	자체사업
	평창읍 대상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600	0	600	자체사업
	미탄면 회동2리(깨비마을) 배수관로 확장공사	380	0	380	자체사업
	대화면 하안미리 배수관로 확장공사	460	0	460	자체사업
	용평 진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448	0	448	자체사업
	방림(계촌지역)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2,000	0	2,000	자체사업

- 금번 추경에 편성된 연구용역비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216백만원으로 기존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도 있으나 대규모 신규 사업을 위한 타당성 용역도 포함되어 있음.  
모든 용역은 추진을 염두에 둔 행정중심 잣대에서 실시되기 보다는 냉철한 판단을 통해 보편타당한 결과가 발생되어 평창군 재정에 큰 부담요소로 번져가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음.

<신규 연구용역비>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6개 사업	216,000	
문 화 관 광 과	백룡동굴 활용방안 용역	110,000	p141
	사과리공원조성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용역	22,000	p146
주민생활지원과	제2차 평창군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	22,000	p160
산 립 과	산림레포츠길(MTB)기본계획 수립(변경)용역	22,000	p208
도 시 주 택 과	평창군 버스터미널 운영방안 연구용역	20,000	p223
	평창군 농어촌버스 노선개편 연구용역	20,000	p223

- 금번 추경에 신규 및 증액 편성된 행사·축제예산은 평창 숲속뮤직& 힐링사업 8억원 등 11개 사업에 총 14억원이 편성되어, 일부 농산물 홍보 등 바람직한 예산도 있으나, 행사 축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소모성 행사개최에 따른 예산낭비라는 부정적 측면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사업의 계획성 측면에서 즉흥적인 행사개최라는 비판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점과 다른 지역보다 산발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우리지역 축제 현실을 고려할 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낭비적인 요소를 해소함은 물론 대표축제 육성을 통해 스스로가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할 것으로 검토됨.



<축제예산(신규,증액)>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11개 사업	1,365,400	
문 화 관 광 과	평창 숲속 뮤직& 힐링 사업	800,000	p140
	겨울관광자원조성(송어축제장포토존)	80,000	p143
	겨울관광지(축제장) 안전시설물 조성	20,000	p143
	겨울관광지 체험프로그램운영	20,000	p143
	진부관광기반시설조성(송어축제 상설체험시설)	70,000	p143
	꿈의대화 캠핑장 및 축제장 시설보수	20,000	p143
	축제조성 시설물(정설기) 임차	40,000	p145
	평창강 뮤직 콘서트 행사지원	50,000	p145
	평창송어축제 홍보 및 행사지원	80,000	p145
농 축 산 과	고랭지 배추 홍보	170,000	p255
	김장 제조용 기계 구입	15,400	p255

- 결산결과에 따른 국·도비잔액 반환금은 총 4,797백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는 것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유와 문제점은 없는 지 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국·도비 반환금 (1억 이상)>

[단위:천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편성액	비 고
계	2건	860,729	
경 제 체 육 과	2017년도 강원일자리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도비보조	560,729	p195
농 축 산 과	2017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 지원사업 ※국고보조	300,000	p265

-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공유지 집단화 부지매입 예산은 20억원으로 공유재산 집단화 목적은 산재되어 비능률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유재산을 집단화하여 이용가치를 높이고 관리비용을 절감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통해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 평창군 안보공원, 대관령복지회관 신축,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등은 사업 입안 시 정확한 산출을 통해 예산편성을 하여야 하나,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을 통해 증액사유가 발생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 안보공원 : (당초) 200백만원 (추경) 215백만원
  - 대관령복지회관 신축 : (당초) 800백만원 (추경) 915백만원
  - 보건의료원 이전신축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국 비	도 비	군 비
'2017. 7월	9,636	4,558	1,139	3,939
현 재	11,839	4,558	1,139	6,142
증가율	122.9%	0	0	155.9%

- 이 밖에 본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와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건의사항 : 없음

○ 기타 특별한 사항 : 없음

【붙임1】 201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결조서 1부.

# 「2018년도 제2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의 결 조 서

## 1. 예산총칙

- 제1조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 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8,781,131	13,463,434
일반회계		404,176,561	12,125,297
특별회계		44,604,570	1,338,137
공기업특별회계		23,386,367	701,591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3,386,367	701,591
기타특별회계		21,218,203	636,546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95,605	11,868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2,817,000	84,510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149,553	4,487
농공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678,175	20,345
수질개선특별회계		16,857,815	505,734
주택사업특별회계		320,055	9,602

- 제2조 :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 제3조 : 2018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없다.
- 제4조 : 2018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 제5조 : 2018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없다.
- 제6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4,028,699천원으로 한다.
- 제7조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9,800,000천원으로 한다.
- 제8조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 2. 예산의결 내역

가. 일반회계 : 원안가결

나. 기타 특별회계 : 원안가결

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 원안가결

3. 채무부담행위사업 : 해당없음

4. 계속비사업 : 원안가결

5. 명시이월사업 : 해당없음